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5.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 개정이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금고 중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 기금결산 －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음	○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금고 중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 기금결산 －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안 제12조)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목 중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2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영 관리)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 산하기관 등에서 안정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